

## 특정 상거래법이란

특정 상거래법(구 명칭 “방문판매법(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)”)은 사업자의 위법·악질적인 권유 행위 등을 방지하고,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. 구체적으로는,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등의 소비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래 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청약철회 등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.

### 특정 상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

1. 방문판매
2. 통신판매
3. 전화 권유 판매
4. 다단계판매 거래
5. 특정 계속적 의무 제공
6.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
7. 방문 구매

#### 특정 상거래법의 개요

1.
  - (1) 행정 규제
2.
  - (2) 민사 규칙

### 특정 상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

#### 방문판매

사업자가 소비자의 자택에 방문해 계약하는 것으로, 상품과 권리의 판매 또는 의무(흔히 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) 제공을 하는 등의 거래와 길거리 판매, 예약 판매 등을 말합니다.

#### 통신판매

사업자가 신문, 잡지, 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하고, 우편, 전화 등의 통신 수단으로 신청을 받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. “인터넷 옥션”도 포함되지만 “전화 권유 판매”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.

#### 전화 권유 판매

사업자가 전화로 권유하여 신청을 받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. 전화를

일단 끊은 뒤, 소비자가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도 해당합니다.

### **다단계판매 거래**

개인을 판매원으로 두고 권유를 한 뒤, 해당 개인에게 다음 판매원의 권유를 시키는 형태로, 판매 조직을 연쇄적으로 확대해 이루어지는 상품·역무(서비스)의 거래를 말합니다.

### **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**

장기·계속적인 역무의 제공과 이에 대해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 현재 에스테틱 살롱, 어학학원, 가정교사, 보습학원, 결혼상대 소개 서비스, 컴퓨터학원 이렇게 6가지의 역무가 대상입니다.

### **업무 제공 권유 판매 거래**

“일거리를 제공하므로 수입이 생긴다”라는 구실로 소비자를 유인해 일에 필요하다며 상품 등을 팔아 금전 부담을 지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
### **방문 구매**

사업자가 소비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
### **▲페이지 맨 앞으로 가기**

### **특정 상거래법 개요**

#### **(1) 행정 규제**

특정 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, 각 거래 유형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합니다. 특정 상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업무 개선의 지시와 업무 정지 명령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.

### **성명 등의 명시를 의무화**

특정 상거래법은 사업자에게 권유 시작 전에 사업자명과 권유 목적임 등을 소비자에게 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### **부당한 권유 행위 금지**

특정 상거래법에서는 가격·결제 조건 등에 대한 부실고지(허위 설명) 또는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위협해 곤혹스럽게 하는 권유 행위를 금지합니다.

## **광고 규제**

특정 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광고할 때에 중요사항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또한, 허위·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## **서면교부 의무**

특정 상거래법은 계약 체결 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### **(2) 민사 규칙**

특정 상거래법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, 그 구제를 쉽게 하는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(청약철회), 취소 등을 인정하며 또한, 사업자에 의한 이 법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.

## **청약철회**

특정 상거래법은 “청약철회”를 인정합니다. 청약철회란 신청 또는 계약 후에 법률로 정해진 서면을 받은 뒤 일정 기간(※) 내에 무조건으로 해약하는 것입니다. (※)방문판매·전화 권유 판매·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·방문 구매에 대해서는 8일간, 다단계판매 거래·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해서는 20일간. 통신판매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.

## **의사표시 취소**

특정 상거래법은 사업자가 부실고지와 고의의 불고지를 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해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소비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## **손해배상액 등의 제한**

특정 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중도 해약을 할 때 등의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설정해 두었습니다.